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이명수·장제원·류성걸

성일종 · 김희국 · 윤상현

허은아 · 홍문표 · 박덕흠

김예지 · 김형동 · 최형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·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 하고 있지 않음.

「항로표지법」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성격의 업무이며,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항로표지시설로 이동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.

또한, 현행법은 「항로표지법」에 따라 일정요건(시설, 선박 등)을 갖추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자와 장비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도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도선과 도선장을 갖춘 도선면허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로 작용되고 있음.

아울러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시행령에서 정한 '바다목' 중 도선이 없는 해역은 선박 확보가 불가하여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·관리, 위 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6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항로표지법」에 따른 항로표지(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) 설치· 관리,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적용배제) 이 법은 다음	제2조의2(적용배제)
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	
니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. 「항로표지법」에 따른 항로
	표지(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
	<u>다) 설치·관리, 위탁관리업</u>
	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
	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